2022. 3. 24.(목) 10:00

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

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도 시 환 경 위 원 회

(수석전문위원 신 성 해)

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김태형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

1. 제안이유

○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, 수소안전관리 등에 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관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

2. 주요내용

○ 경기도 수소산업 홍보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7조 신설)

3. 검토의견

○ 「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친환경 연료인 수소에너지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안전 교육 등에 효과적인 홍보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

○ 안 제17조제1항에서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, 수소안전관리 등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관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한 것은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·이해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

❍ 안 제17조제2항에서 홍보관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도록 정한 것은 홍보컨텐츠 발굴 등 홍보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됨

❍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민이 수소를 안전한 친환경연료로 인식하여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